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주요 개정사항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1	19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2	29	해설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3	34	훈령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4	36	해설	마. 유예 1) '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마. 유예 1)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사도교육감(타 사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상세 내용은 소관 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의 공문 및 안내사항 참조) ※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 기관임에 유의!(참고자료 3) 참조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5	34	훈령	<p>23.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p> <p>※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p>	<p>23.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p> <p>※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p>
6	36	해설	<p>다. 면제</p> <p>1),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p> <p>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p> <p>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p>	<p>다. 면제</p> <p>1),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p> <p>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p> <p>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p>
7	36	해설	<p>라. 취학유예</p> <p>1) 입학 전 유예자(면제자)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p> <p>※ 보호자 행방불명 등의 경우는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만 통보함.</p>	<p>라. 취학유예</p> <p>1) 입학 전 유예자(면제자)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p> <p>※ 보호자 행방불명 등의 경우는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만 통보함.</p> <p>※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취학유예 처리함.</p>
8	38	해설	<p>자. 명예졸업</p> <p>1)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p> <p>※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p> <p>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p> <p>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으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p>	<p>자. 명예졸업</p> <p>1)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p> <p>※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p> <p>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p> <p>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 (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으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p>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9	40	기재 요령	㉓ 특기사항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㉓ 특기사항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10	40	기재 요령	<신설>	<예시>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으로 인정된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학적 사항</td> <td>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4년 02월 07일 <input type="checkbox"/>초등학교 명예졸업</td> </tr> <tr> <td>특기 사항</td> <td>2023.07.05.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td> </tr> </table>	학적 사항	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4년 02월 07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명예졸업	특기 사항	2023.07.05.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
학적 사항	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4년 02월 07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명예졸업							
특기 사항	2023.07.05.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							
11	40	기재 요령	<신설>	<예시> 사망으로 인해 면제 처리된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학적 사항</td> <td>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6월 15일 면제)</td> </tr> <tr> <td>특기 사항</td> <td>2023.06.15. 질병으로 사망</td> </tr> </table>	학적 사항	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6월 15일 면제)	특기 사항	2023.06.15. 질병으로 사망
학적 사항	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6월 15일 면제)							
특기 사항	2023.06.15. 질병으로 사망							
12	40	기재 요령	<신설>	<예시>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유예한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학적 사항</td> <td>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3월 28일 유예)</td> </tr> <tr> <td>특기 사항</td> <td>2023.03.28.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한 유예 2023.03.29. 정원 외 학적관리</td> </tr> </table>	학적 사항	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3월 28일 유예)	특기 사항	2023.03.28.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한 유예 2023.03.29.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 사항	2023년 03월 02일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3월 28일 유예)							
특기 사항	2023.03.28.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한 유예 2023.03.29. 정원 외 학적관리							
13	42	기재 요령	라. 재취학·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1) 재취학·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재취학·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라. 유급·재취학·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1) 유급·재취학·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유급·재취학·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유급·재취학·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유급·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14	44	기재 요령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4) 출입국사실증명서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5	48	기재 요령	카. 소년원학교 등 학적처리 방법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입교한 경우, 원적교에서는 [참고자료5]를 참조하여 위탁학생 등으로 처리한다.	카. 소년원학교 등 학적처리 방법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입교한 경우, 원적교에서는 [참고자료5]를 참조하여 위탁학생 등으로 처리한다.
16	48	기재 요령	5) 소년원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고용노동부)	5) 소년원 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고용노동부)
17	48	기재 요령	타.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타.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객관적인 자료의 예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18	51	훈령	<p>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p> <p>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형제, 자매, 부, 모</td> <td>1</td> </tr> <tr> <td>입양</td> <td>○학생 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3">사망</td> <td>○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 <td>5</td> </tr> <tr> <td>○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p>※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p>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p> <p>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형제, 자매, 부, 모</td> <td>1</td> </tr> <tr> <td>입양</td> <td>○학생 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4">사망</td> <td>○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 <td>5</td> </tr> <tr> <td>○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td> <td>3</td> </tr> <tr> <td>○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td> </tr> <tr> <td>○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p>※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19	51	훈령	<신설>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20	53	훈령	<p>마. 기타 결석</p> <p>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p> <p>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p> <p>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p>	<p>마. 기타 결석</p> <p>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p> <p>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p> <p>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p> <p>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p> <p>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p>																																		
21	57	해설	<신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22	57	해설	9)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 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23	58	해설	13)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14)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사전투표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하교 후, 주말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포함)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24	58	해설	<신설>	15) 공직에 선출된 자의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란에 '교외활동(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단,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은 출결특기사항 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25	65	기재 요령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2)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 소속 학교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p>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p> <p>※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 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p> <p>3)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p> <p>(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p> <p><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4일 제외함.</p> <p>(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3회 누적 시 1일로 간주</p> <p><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1회와 결과 2회를 한 경우 합산이 3회가 되므로 1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1일 제외함.</p> <p>(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p>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p> <p>**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p> <p>※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p> <p>※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p> <p>2)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p> <p>(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p> <p><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에서 4일 제외함.</p> <p>(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p> <p><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p> <p>(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26	69	해설	<신설>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 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7	71	기재 요령	<p>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할 수 있다.</p> <p>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p> <p>2) 타 초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p>	<p>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할 수 있다.</p> <p>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p> <p>※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p>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학교교육계획 입력 조건(모두 충족):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div>	2) 타 초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초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8	72	기재 요령	㉓ 자율활동 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㉓ 자율활동 다. ※ 학기 단위로 선출 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29	73	기재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10px;"> <p>[기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10px;"> <p>[기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과 같이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div>
30	86	해설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31	90	기재 요령	㉒ 기타 가.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만 입력한다.	㉒ 기타 가.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32	91	기재 요령	나.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 (실과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나.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 (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만 입력한다.
32	94	해설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7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7호 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7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 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 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95	기재 요령	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다.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다.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근거 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연번	2023 학생부 기재요령	영역	현행	개정(안)
35	98	훈령	제18조(자료의 보존)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6	98	훈령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37	98	훈령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7호 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38	103	기재 요령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유급,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39	108	기재 요령	1. 제20조(자료의 제공) 가.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서식은 별표11을 활용하되, 절차·보관방법은 학교장이 정함(초등학교 6년 보관).	1. 제20조(자료의 제공) 가.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서식은 별표11을 활용하되, 절차·보관방법은 학교장이 정함(초등학교에서 학생 졸업 후 6년간 보관).